

# 목 차

정 관 .....	1
-----------	---

# 정 관

## 제1장 총 칙

### 제 1 조(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라 칭하며 영문으로 HYUNDAI MIPO DOCKYARD CO.,LTD. 라 기술한다.

### 제 2 조(목적)

본 회사는 하기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다.

- (1) 선박 건조
- (2) 각종 선박의 수리 및 개조
- (3) 예선업
- (4) 수상구조물 건조사업
- (5) 선박 PLANT, 산업용 기계 및 부품의 제조
- (6) 철구조 제품의 제조
- (7) 중고 선박의 매매
- (8) 근린 생활시설(식당, 슈퍼마켓, 이용원) 운영업
- (9) 레저 스포츠 시설 운영업
- (10) 공연장 운영업
- (11) 의료업
- (12) 환경오염 방지 시설업
- (13)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업
- (14) 철강재 설치 공사업
- (15) 유창 청소업
- (16) 부동산 임대업
- (17) 산업기계 수리업
- (18)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
- (19)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 강재 생산업
- (20) 금속 열처리업
- (2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 (22) 외항 화물 운송업
- (23) 내항 화물 운송업
- (24) 항공 및 육상화물 취급업
- (25) 수상화물 취급업
- (26) 공학 및 기술연구 개발업
- (27)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28) 무역업
- (29) 고철 판매업
- (30) 보육시설 운영업
- (31) 전 각호에 부대하는 관련사업

###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 ① 본 회사는 본점을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에 둔다.

② 본 회사는 영업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국내외의 각지에 공장, 지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4 조(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md.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못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 제 2 장 주 식

#### 제 5 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만주이며, 일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 제 6 조(주식의 종류)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제 7 조(배당우선 전환주식:1종 종류주식)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1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만주로 한다.
- ②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10% 이내 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1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⑥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⑦ 1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 ⑧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7조의 2(배당우선 전환주식:2종 종류주식)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2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종 종류주식과 합산하여 200만주로 한다.
- ② 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제7조 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 ③ 2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 부터 1개월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4. 2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전환할 수 있다
  - 가. 보통주식의 주가가 2종 종류주식의 주가를 1년 평균 1.3배 상회하는 경우
  - 나. 종류주식의 유통주식 비율이 1년간 10% 미만인 경우
  - 다. 특정인이 5% 이상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라.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제 7조의 3(배당우선 상환주식:3종 종류주식)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3종 종류주식”이라함)으로 하며,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만주로 한다.
- ② 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제7조 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 ③ 3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발행가액의 연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의 합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3종 종류주식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3종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3종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로 의결권이 있는 종류주식(“3-1종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3-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의결권 있는 3-1종 종류주식의 의결권은 1주당 1개로 한다.

제 8 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제 9 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제 9 조의 2(동등배당)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제 9 조의 3(주식매수 선택권)

① 본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6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는 없고, 임원 또는 직원의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 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 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사용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명의 개서 등)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 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부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 취급케 한다.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전자주주명부)

본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 12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본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날에 주주명

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사 채

#### 제 13조(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제 13 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9 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4 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

- 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 주인수 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해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 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 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 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 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 인수의 청 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 가액은 주식의 액면금 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의 2(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14조의 3(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 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 자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15 조(총회의 소집)

-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 12조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③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 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하여 기타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⑤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 16 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 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 17 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 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사장, 부사장, 전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8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19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일주마다 1개로 한다.

#### 제 20 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제 21 조(의결권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 제 22 조(정족수와 결의 방법)

주주총회의 의결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 23 조(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 회사에 보존한다.

###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 제 24 조(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제 25 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선임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 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26 조(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하며, 선임시에는 각 개인별 임기를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료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이사는 재선될 수 있다.

#### 제 27 조(이사의 해임 및 결원)

- ① 이사의 해임은 상법 제 385 조에 따른다.
- ②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한 때
  2. 파산 선고를 받았을 시
  3.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았을 시
  4. 사망시

#### 제 28 조(이사의 보선)

- ① 이사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 24 조에서 정하는 원 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 29 조(이사의 직무)

- ①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 수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②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 ⑤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는 경우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30 조(이사의 보수)

- ① 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 제 31 조(이사의 책임)

- ① 이사는 근무태만 등의 경우에는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이사가 본 회사의 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단, 그러한 손실, 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 위배로 발생하거나, 그 밖의 회사에 의한 보상이 법률

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2 조(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 제 33 조(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 ②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둘 수 있다.

### 제 34 조(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방법)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③ 이사회의 이사는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④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35 조(대표이사)

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 제 36 조(의장)

- ① 이사회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후 첫 회 이사회에서 임기 1년의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 ② 의장이 임시의장을 지명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은 의장을 대신하여 의장 직무를 대행 할 이사의 순서를 정한다.
- ③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의장 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지명하며, 의장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본 조 제 2항에서 정한 순으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 37 조(의안)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 단,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8 조(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의안,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38 조의 2 (이사회내 위원회)

- ① 이사회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로 회사경영

전략 및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제 38 조의 3(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한다.

#### 제 38 조의 4(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당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38조의 2의 제 1항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중에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조의4 제 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⑦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38조의 5(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제 38조의 6(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8조의 7 (외부감사인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9 조(경영진의 선임과 보수)**

- ①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둘 수 있다.
- ② 경영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40 조(고문 등)**

- ①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의 추천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최고 경영자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와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감 사**

**제 40 조의 2(감사)**

<삭제>

**제 40 조의 3(감사의 임기)**

<삭제>

**제 40조의 4(감사의 보선)**

<삭제>

**제 40 조의 5(감사의 직무)**

<삭제>

**제 40 조의 6(감사록)**

<삭제>

**제 40 조의 7(감사의 보수)**

<삭제>

**제 7 장 계 산**

#### 제 41 조(사업연도)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 42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그 등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3 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 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 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제 44 조(이익배당)

- ① 이익 배당금은 제 12조에서 정한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②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③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④ 제3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 제 44 조의2(분기배당)

- ① 본 회사는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연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 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제 9조의 2 규정을 준용한다.

제 44조의 3(주식의 소각)

<삭제>

## 부 칙

제 1 조(본 정관 개정의 시행)

본 정관은 202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이사의 시차임기제)

<삭제>

제 3 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른다.

제 4 조(내규)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서 업무상 필요한 세칙이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원시정관 1975년 4월28일

개 정 1975년 5월13일

(제 3 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개 정 1975년10월18일

(제 26 조) 대표이사의 직무

(제 29 조) 이사회

개 정 1978년 7월 1일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제 2 조) 목적

개 정 1982년11월15일

(제 2 조) 목적

개 정 1983년 2월26일

(제 31 조) 회계연도

개 정 1983년 3월23일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개정 1983년 8월 13일	(제 2 조) 목적 (제 4 조) 공고방법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제 6 조) 일주의 금액
개정 1984년 5월 26일	(제 8 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제 34 조) 회계연도
개정 1985년 2월 23일	전면개정
개정 1986년 2월 22일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개정 1987년 2월 28일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제 6 조) 일주의 금액
개정 1987년 8월 5일	(제 2 조) 목적
개정 1988년 3월 5일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제 31 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 32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제 42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제 44 조) 이익배당
개정 1994년 2월 26일	(제 1 조) 상호 (제 2 조) 목적
개정 1995년 2월 25일	(제 13 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 14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개정 1996년 2월 28일	전면개정
개정 1997년 2월 28일	(제 2 조) 목적 (제 7 조)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총수와 내용 (제 31 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 44 조) 이익금의 처분
개정 1998년 3월 28일	전면개정
개정 1999년 3월 27일	(제 2 조) 목적 (제 9 조) 신주인수권 (제 12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 18 조) 의장 (제 25 조) 이사 및 감사의 원수 (제 26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제 30 조) 이사의 직무 (제 35 조) 이사회 구성과 권한 (제 36 조) 이사회 소집과 결의방법 (제 41 조) 소위원회<삭제>(1999.3.23)



	(제 42 조) 경영진의 선임과 보수
	(제 47 조) 이익배당
개 정 2000년 3월24일	(제 2 조) 목적
	(제 7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제 9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제 13 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 14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제 36 조) 이사회 의 소집과 결의방법
	(제 6 장) 감사
개 정 2001년 3월17일	(제 16 조) 소집통지 및 공고
	(제 22 조) 정족수와 결의방법
	(제 34 조) 이사회 의 소집과 결의방법
개 정 2002년 3월16일	(제 9 조의 3) 주식매수 선택권
	(제 16 조) 소집통지 및 공고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제 6 장) 감사 <삭제>
	(제 40 조의 2) 감사 <삭제>
	(제 40 조의 3) 감사의 임기 <삭제>
	(제 40 조의 4) 감사의 보선 <삭제>
	(제 40 조의 5) 감사의 직무 <삭제>
	(제 40 조의 6) 감사록 <삭제>
	(제 40 조의 7) 감사의 보수 <삭제>
	(제 38 조의2) 이사회 의 의사록
	(제 38 조의3)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제 38 조의4) 감사위원회의 구성
	(제 38조의 5) 감사위원회의 직무
	(제 38조의 6) 감사록
	(제 38조의 7) 외부감사인 선임
	(제 44조의 3) 주식의 소각
개 정 2003년 3월15일	(제 9 조) 신주인수권
	(제 9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제 13 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 14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 16 조) 소집통지 및 공고
	(제 29 조) 이사의 직무
	(제 34 조) 이사회 의 소집과 결의방법
	(제 38 조의 7) 외부감사인 선임
	( 제 42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제 2 조) 목적
개 정 2004년 3월 18일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제 44 조의 2) 분기배당

개정 2005년 3월 18일	(제 38 조의 2) 이사회내 위원회
개정 2006년 3월 17일	(제 24 조) 이사의 수 (제 26 조) 이사의 임기
개정 2007년 3월 16일	(제 29 조) 이사의 직무  (제 2 조) 목적 (제 9 조) 신주인수권 (제 9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제 10 조) 명의개서 등 (제 13 조) 전환사채의 발행
개정 2009년 3월 13일	(제 14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 16 조) 소집통지 및 공고 (제 38 조의 4) 감사위원회의 구성 (제 38 조의 5) 감사위원회의 직무 (제 44 조의 2) 분기배당 (제 44 조의 3) 주식의 소각 (부칙 제 2조) 이사의 시차임기제<삭제>  (제 4 조) 공고방법
개정 2010년 3월 12일	(제 10 조) 명의개서 등 (제 29 조) 이사의 직무 (제 38 조의 7) 외부감사인 선임
개정 2012년 3월 23일	(제 6 조) 주식의 종류 (제 7 조) 배당우선 전환주식:1종 종류주식 (제 7 조의 2) 배당우선 전환주식:2종 종류주식 (제 7 조의 3) 배당우선 상환주식:3종 종류주식 (제 9 조) 신주인수권 (제 13 조) 사채의 발행 (제 13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제 34 조)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방법 (제 38 조의 5)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제 42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제 43 조) 이익금의 처분 (제 44 조) 이익배당 (제 44 조의 2) 분기배당 (제 44 조의 3) 주식의 소각 <삭제>  (제 9 조) 신주인수권 (제 9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제 13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개정 2016년 3월 18일	(제 14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 14 조의 2)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27 조) 이사의 해임과 결원 (제 38 조의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정 2019년 3월 25일

- (제 8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  
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제 10 조) 명의개서 등
- (제 11 조) 전자주주명부
- (제 14조의 2)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 (제 14조의 3)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  
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제 27 조) 이사의 해임 및 결원
- (제 38조의 4) 감사위원회의 구성
- (제 38조의 5) 감사위원회의 직무
- (제 38조의 7) 외부감사인의 선임
- (제 9 조의 2) 동등배당
- (제 12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제 14 조의 3)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제 15 조) 총회의 소집
- (제 38 조의 4) 감사위원회의 구성
- (제 44 조) 이익배당
- (제 44 조의 2) 분기배당

개정 2021년 3월 22일